

의안 번호	제2670~2672호
----------	-------------

2025. 10. 27.(월) 11:00
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심사보고서

안 건

총 3 건(개정3) : 불임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 심사보고 총괄

## I 심사대상 안건

- 의안번호 제2670호 :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71호 :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제2672호 :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II 심사 경과

의안번호	제출일	제출자 (발의자)	회부일	상정일 (제1차 산건위)
제2670호	2025. 10. 2.	장성군수 (건설과)	2025. 10. 2.	2025. 10. 23.
제2671호	2025. 10. 2.	장성군수 (지역개발과)	2025. 10. 2.	2025. 10. 23.
제2672호	2025. 10. 2.	장성군수 (산림편백과)	2025. 10. 2.	2025. 10. 23.

## III 심사 결과

안건	심사결과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3.(제3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관련 조항을 신설·삭제·개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점용료 인상을 상한을 연 5%로 신설(제3조제6항)
-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개선(제5조제2항)
- 하천수사용 및 배수점용료 징수 항목 삭제(별표1)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안은 주민 부담 완화와 공정한 점용료 부과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에도 부합함.
- 다만, 인상을 상한 적용에 따른 장기 재정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지역개발과)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3.(제3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재공고 · 열람 절차 신설
-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및 기준 명확화
- 시장정비사업구역 건폐율 · 용적률 완화
- 농공단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
- 자연녹지 · 농림지역 등에서의 건축 가능 범위 확대
- 용어 변경(‘분뇨 ·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방식을 ‘군수 임명 또는 위촉’으로 변경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이번 개정은 도시계획 제도의 현실화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부합함.
- 다만, 개발행위 허용범위 확대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 심사경위

- 제출일자 : 2025. 10. 2.
- 제출자 : 장성군수(산림편백과)
- 회부일자 : 2025. 10. 2.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5. 10. 23.(제37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로수 조성·관리 행위의 부담금 납부기간 명시(제10조제9항 신설)
- 미납 시, 징수절차의 근거 마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개정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용부담 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함.
- 향후 실제 적용 시 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고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회의록 비치)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